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를 신고 의무자로 하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8327호, 2021. 7. 27. 공포, 2022. 1. 1.)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며, 「양식산업발전법」(법률 제16568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 시행에 따라 재산의 합계액 산정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9.17. ~ 10.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 제2조의3 각항 중 “법 제7조제4항에”를 “법 제7조제5항에”로 한다. 제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어업과”를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 제1항 내지 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민원업무 관련 종사자</u>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 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법 제7조제5항에 ----- ----- ----- ----- ③ ----- ----- 법 제7조제5항에 ----- -----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④ ~ ⑤ (생략) 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 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생략)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나. 임업소득:----- 다. 어업소득: <u>어업과</u>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3. ~ 4.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소득의 범위) ①----- ----- ----- -----. 1. (현행과 같음)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나. 임업소득:----- 다. 어업소득: <u>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u> ----- 라. 그 밖의 사업소득:----- 3. ~ 4. (현행과 같음)
---	--